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및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대상 및 상한액을 확대·인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육아휴직 시작일”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후단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중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을 “공무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중 “근로시간”을 각각 “근무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2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 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 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 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11조의2제6항 본문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근로시간”을 각각 “근무시간”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의 “12개월째”는 “18개월째”로 본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 확대에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제11조의2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제11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 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 ----- -----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 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 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육아휴직 7개월 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 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u>째까지: 250만원</u>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 <u>째까지: 200만원</u>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 <u>만원</u>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② ----- ----- ----- -----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생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

-----.

1. -----

가. -----

-----.

250만원-----

-----.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

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생략)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00만원-----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⑤ 공무원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

----- 근무시간 -----

----. ----- 근무시간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 = 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 = 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 = 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⑥ ----- 근무
시간 -----

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나목·제2호나목의 “12개월째”는 “18개월째”로 본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⑧ -----

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u>근로시간</u>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u>근로시간</u>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 ----- <u>근무시간</u> ----- ----- ----- -----. ⑨ ----- ----- -- <u>근무시간</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